
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(제8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.

다.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

라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마.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바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1호	등록 취소		
나.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2호	업무 정지 1년	등록 취소	
다. 추진위원회,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·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 에 관한 계약 없이 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 행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3호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
라.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4호	등록 취소		
마.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 약금액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 을 말한다)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5호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
바. 법 제107조에 따른 보고·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·검사를 거 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6호			
1)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
2)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 으로 한 경우	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3개월
3)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	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
사. 법 제111조에 따른 보고·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·검사를 거 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7호			
1)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

2)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	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3개월
3)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
아.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8호	등록 취소		
자.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9호	등록 취소		
차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(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	법 제106조 제1항제10호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9개월	업무 정지 1년
카. 법 제103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11호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년	
타.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6조 제1항제11호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3개월